

[별지 제4호 서식]

비조치의견서 (■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담당자	담당부서	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	담당자 (직위, 성명)	선임조사역 신민식	연락처	02-3145-7454
요청대상 행위	<input type="checkbox"/> 보험회사가 퇴직연금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(차입한도)을 한시적으로 위반하여도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					
판단	<input type="checkbox"/> 최근 금융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(퇴직연금 특별계정)은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하더라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 ※ 동 비조치의견서는 2023.3.31.까지 유효					
판단이유	<input type="checkbox"/>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시장을 감안할 때, 퇴직연금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행 특별계정 차입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채권 등 자산을 단기간 대량 매각할 경우 ◦ 경색된 자금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, 채권 가격 폭락에 따른 보험계약자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채권시장 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차입제한을 유예하여 퇴직연금 대규모 환매에 대응한 유동성 확보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					
2022년 11월 30일 금융감독원 원장 (인)						

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10조제1항·제2항 참조)

-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-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